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의안번호	92
------	----

제출년월일 : 1996. 2. 5

제 출 자 : 조례정비특위위원장

제안이유

○ 부천시의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주요골자

-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함
- 위원회는 연2회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함
 -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립중앙도서관장 및 도서관 및 문고와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부천시 교육·문화계 인사와 기타 도서관·문고 및 독서업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명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 및 도서관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독서의 달'행사 등 각종 독서진흥운동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이동도서관 및 문고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회의는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수시 개최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계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록)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